

우리복지관 최종종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장

I 모집 분야

□ 채용분야

구분	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기간제 근로자	2급 사업관리자	1명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이용자 돌봄 제공 ◦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상담 ◦ 이용자 문서 및 프로그램 제반 서류 관리 ◦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 사례회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4급 제공인력	2명	◦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도전적행동 지원계획 수립, 과정평가 등 ◦ 이용자 돌봄제공 ◦ 이용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 임용조건

- 계약기간: 채용일 ~ 2027. 5. 31.(사업 협약기간 만료시까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 ※ 사업 해지 등 사업 협약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지: 우리복지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보수수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수당(50,000원)

II

응시자격 (공고일 기준)

□ 공통요건

구분	내용	비고
공통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 성별 : 제한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분야별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그 경력기간 내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기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_주간 개별 제공기관인력기준]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

직급	자격기준
2급 (사업 관리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4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후 장애인 복지 분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점 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만점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만점 5%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Ⅲ

채용 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공고	25.5.28.(수) ~ 25.6.15.(일)	
원서접수	25.5.28.(수) ~ 25.6.15.(일)	
서류전형	25.6.17.(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6.18.(수)	
면접시험 (인성·역량 면접)	25.6.23.(월)	
최종합격자 발표	25.6.24.(화)	
임용	25.7.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우리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배수: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 응시기회 부여
- 통지방법: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시

□ 면접전형

- 면접 장소: 우리복지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면접 방법: 다대다 또는 다대일 정보가림 면접
- 합격 배수: 선발예정 인원 이내
- 면접 평정요소

공적책임성 등	이해력·지식수준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인성 및 직업관	창의성 및 전문성	배점
20	20	20	20	20	100

- 통지방법: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통지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사회적취업취약계층→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임 용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IV

지원서 접수

□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 응시원서 [서식1] - 자기소개서 [서식2] -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서식4] - 주민등록 초본* * 등본 미인정, 개명·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해당자 제출	- 자격증 사본 - 재직/경력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 경력 증명서 제출시 필수 첨부)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행)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자격증 사본) 보유한(1급, 2급) 자격 모두 제출 (재직/경력 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제출 서류 불인정
최종 합격자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 표시)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등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관련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결격사유) 확인용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

□ 접수 방법

○ 전자우편(woori-7587942@naver.com)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우리복지관 1층 통합사무실 경영지원팀(제주시 산천단남길 40)

※ 방문접수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IV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우리복지관 경영지원팀(070-8808-25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